##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66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부승찬·안규백·박용갑

정진욱 • 윤후덕 • 한정애

차지호 · 허 영 · 박민규

이상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되어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 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되어 있음.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생도들도 군사 교육 과정을 거쳐 장교로 임관됨에도 장기복무를 위해서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기회손실이 커 복무의욕을 저하시키고, 타 육·해·공 사관학교와 비교할 때 불공정하여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강군 육성을 저해할 수 있음. 또한 직업군인을 목적으로 하는 생도들에게 국가의 지원으로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이들을 단기복무장교로 규정하는 것은 국고의 낭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

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군인사법」 6조와 7조의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함. (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제7조제1항제4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사관학교"를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 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 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한다.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3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단서를 다음 과 같이 한다.

다만,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 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부분,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교의 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생 략)	제6조(복무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한다.		
1. <u>사관학교</u> 를 졸업한 사람	1. <u>사관학교,</u> 육군3사관학교, 국	
	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	
	단과학기술사관학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한다.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	<u>&lt;</u> 삭 제>	
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		
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		
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		
로 한다.		

법

- 1. ~ 3. (생략)
-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 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 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 로 하고, 「병역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 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 을 단축할 수 있다.

5. ~ 7. (생략)

② ~ ⑥ (생 략)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 정법률

- 제6조(복무의 구분) ① · ② (생 략)
  -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1. ~ 3. (현행과 같음)
4
<u>「병역법」</u>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
정법률
제6조(복무의 구분)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람으로 한다.

- 1. (생 략)
- 1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 교를 졸업한 사람
- 2. ~ 4. (생략)
- ④ ~ ⑧ (생 략)
-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 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 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 로 하다.
  - 1. ~ 3. (생략)
  -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 4. -----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 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 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 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 으로 하고, 「병역법」 제57 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 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 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 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

1. (현	행과	같음)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다만.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 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 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 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 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 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 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 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 7. (생략)

② ~ ⑥ (생 략)

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수 있다.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